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
2021. 12. 9.(목) 10:00

제23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
(경제환경국 소관)



복 지 건 설 위 원 회
전문위원 추병수

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148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1. 11. 10.
- 라. 회부일자 : 2021. 11. 10.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금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.

3. 설치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」

4. 기금운용의 기본방향

가. 기금사업의 목표

금천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 간 상호 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제반사업 추진

나. 2022년도 기금사업 개요

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기반 조성을 위한 안정적인 기금 확보

5.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

○ 연도말 기금 조성액

(단위 : 천원)

기 금 명	2021년도말 조성액 ㉠	2022년도 기금운용계획			2022년도말 조성액 ㉡=㉠+㉢	비고
		수입㉢	지출㉣	증 감 ㉤=㉢-㉣		
남북교류협력기금	101,505	51,950	1,800	50,150	151,655	

○ 자금 운용 계획

- 수입계획

(단위 : 천원)

항 목	수입액	전년도수입액	증 감
계	51,950	51,525	425
공공예금 이자	1,950	1,525	425
일반회계 전입금	50,000	50,000	0

- 지출계획

(단위 : 천원)

항 목	지출액	전년도지출액	증 감
계	1,800	1,600	200
남북교류협력위원회 참석수당	1,800	1,600	200

6. 검토의견

○ 기금 개요

남북교류협력기금은 금천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조성 및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2019년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」를 근거로 설치되었음.

○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

수입내역은

공금예금 이자수입	195만원
전입금	5,000만원

지출내역은

남북교류협력위원회 참석수당 180만원

- 2022년도 기금사업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기금확보이며 조성 목적에 적합하게 계획안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되며, 향후에도 안정적 기금 확보를 통하여 제반 사업의 추진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봄.

관련 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 [시행 2021. 10. 21.] [법률 제18092호, 2021. 4. 20., 일부개정]

제142조 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

③ 제1항에서 "재산"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(약칭:지방기금법)

[시행 2021. 4. 6.] [법률 제17836호, 2021. 1. 5.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"기금"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·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.

다만,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제외한다.

[전문개정 2011.5.30.]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1.5.30.]

□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

제3조(기금의 설치 및 조성) ① 구청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구 출연금
2. 기금의 운용수익금
3. 그 밖의 수입금

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.

1. 구와 북한 주민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북한의 재해·재난 및 기근·질병 등에 대한 인도주의적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
2. 기금의 조성·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
3. 그 밖의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지원

제5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·운용한다.

②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2.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
3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